검토사항 적합 여부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 ○ 연구개발용역 -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(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,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･관리･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) - 신성장 R&D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 (다만, ① 임상 1상~3상 시험의 경우,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) - 서비스R&D는 자체R&D 한정하여 인정(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R&D의 경우 위탁･공동연구개발도 인정) 예 아니요 위탁 ･ 공동 연구 개발 기업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 용역을 「조특령」 별표6.1. 나.1)에 해당 하는 기관에 위탁(재위탁 포함)할 것 ○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(재위탁 포함)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- 대학, 전문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내외 비영리 법인(부설 연구기관 포함) 국내외 연구기관 - 전담부서등(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)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-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- 산학협력단, 산업기술연구조합, 기술시험･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§4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(산업디자인 전문회사, 한국디자인진흥원 등) ○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예 아니요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 제외 ○ 조특령 제9조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1.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예 아니요